#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06

발의연월일: 2024. 8. 7.

발 의 자: 박성준·황정아·박홍근

윤종군ㆍ허 영ㆍ허종식

한민수 • 백혜련 • 정성호

이훈기 • 박희승 • 민병덕

박수현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총급여액이 8천만원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지급하는 월세액의 100분의 15(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월세액이 상승하는 경향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므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제적용이 되는 월세액 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1천200만원 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의2제1항 단서 중 "1천만원"을 "1천200만원"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
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제) 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	
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	
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	
항·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	
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	
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	
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	
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	
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	
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	

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③(생략)

<u>1천200만원</u>
②·③ (현행과 같음)